#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(전문)

제정 2000. 7.27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-196호 개정 2002. 12.2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-270호 2004. 9.2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-232호 2008. 12.9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-707호 2009. 8.2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677호 2012. 8.20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533호 2014. 1.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889호 2016. 6.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 64호

# 1.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

(단위 : 천원/m²)

구 분 (주거전용면적기준)		건축비 상한가격 (주택공급면적에 적용)
5층 이하	40 m² ) ই}	1,126.7
	40m² 초과 ~ 50m² 이하	1,145.2
	50m² 초과 ~ 60m² 이하	1,109.5
	60m² 초과	1,120.8
6~10층 이하	40 m² 이하	1,209.8
	40m² 초과 ~ 50m² 이하	1,226.1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1,188.5
	60m² 초과	1,192.3
11~20층 이하	40 m² া ই	1,143.0
	40m² 초과 ~ 50m² 이하	1,154.1
	50m² 초과 ~ 60m² 이하	1,119.3
	60m² 초과	1,118.8
21층 이상	40 m² া কী	1,162.6
	40m² 초과 ~ 50m² 이하	1,173.8
	50m² 초과 ~ 60m² 이하	1,139.2
	60m² 초과	1,138.4

\*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1조제5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그 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하며 표준건축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 되었음

#### 2.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

2023년 개정안 고시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(국가·지방자치단체·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함) 또는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는 분(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경우를 말함)부터 적용하다.

#### 3. 재검토기한

국토교통부장관은「행정규제기본법」제8조 및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